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Korea

블록체인산업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

– 전자금융거래법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2018. 11. 21 (수) 14:00 ~ 16: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재단법인 여시재, 한국블록체인협회,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사)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 Korea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

목 차

좌장: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발 제

1.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 ····· 1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토 론

1. **유재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 31
2.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 35
3.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 39
4. **이상용**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45
5.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55

별 첨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안안)** ···· 63
2. **전자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안)** ····· 81

발 제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

구 태 언 (테크앤로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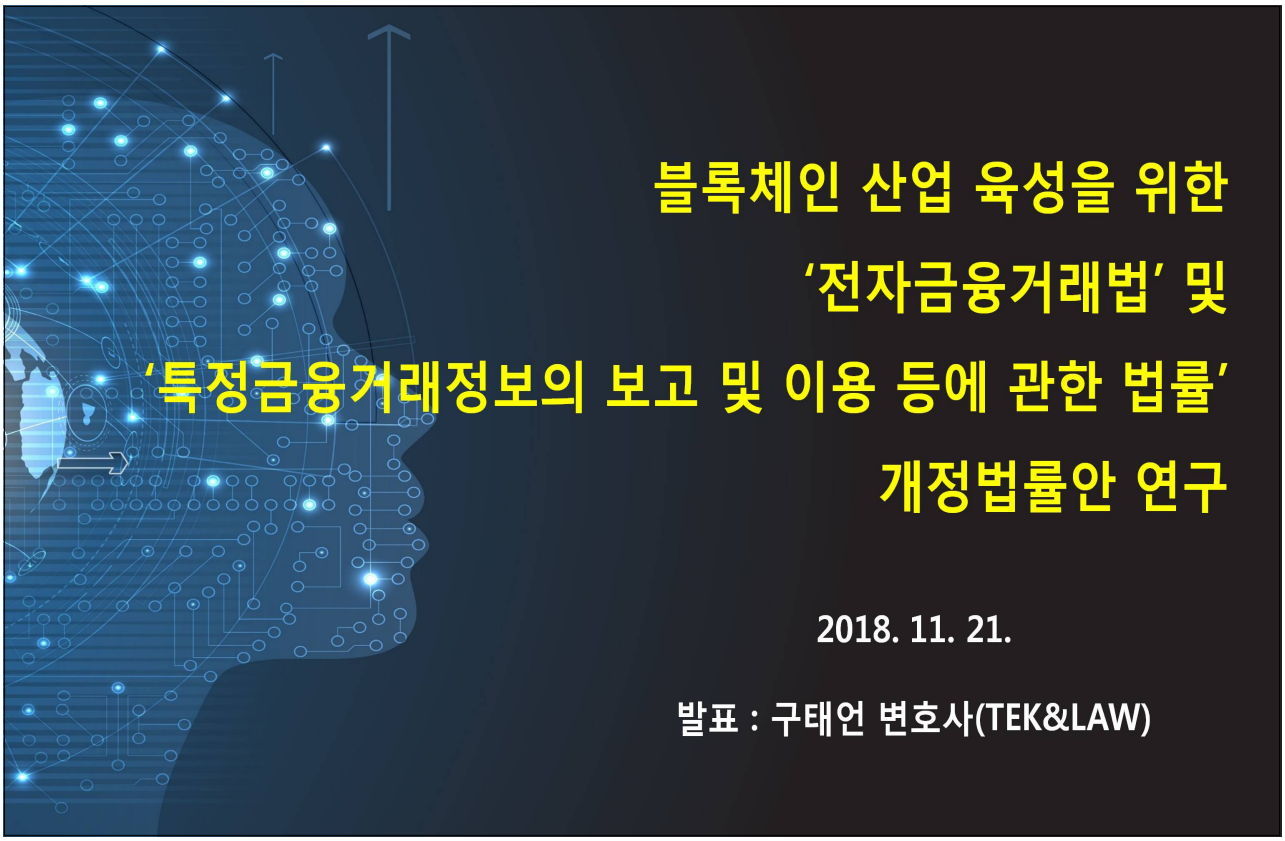

< 목 차 >

1. 정책적 접근방향

2. 입법 취지(제안 이유)

3. 전자금융거래법 쟁점별 논의 사항

가. Crypto Token 용어 정리

나. 거래소(취급업)의 범위

다. 거래소(취급업)의 진입규제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쟁점별 논의 사항**

2

< 목 차 >

1. 정책적 접근방향

2. 입법 취지(제안 이유)

3. 전자금융거래법 쟁점별 논의 사항

가. Crypto Token 용어 정리

나. 거래소(취급업)의 범위

다. 거래소(취급업)의 진입규제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쟁점별 논의 사항**

1. 정책적 접근방향(입법/정부/민간)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 목 차 >

1. 정책적 접근방향

2. 입법 취지(제안 이유)

3. 전자금융거래법 쟁점별 논의 사항

가. Crypto Token의 법률상 명칭 정리

나. 거래소(취급업)의 범위

다. 거래소(취급업)의 진입규제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쟁점별 논의 사항**

5

2. 입법취지(제안이유)

- 정부의 정책방침(ICO금지)과 실행 불일치(입법 미조치)로,
  - ✓ 우수업체는 해외로 러시, 국내는 사기성 ICO 피해자 급증
  - ✓ 경쟁력 갖춘 국내 거래소의 매출급락과 역량미달 거래소의 난립 심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Crypto Token 거래소 자율규제심사 시행 등 업체의 자율적인 기준 마련에도 은행들의 금융거래 거절로 거래소들의 사업난 심화 등 사실상 규제 상태
- Crypto Token 산업규제로 인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 기회 상실로 해외거래소들의 급성장
- 국회에서 Crypto Token과 관련한 10여개 법안 발의, 논의 진행 중단
  - ✓ 그러나 '가상화폐', '암호통화', 'Crypto Token' 등 법안 내 Crypto Token을 부르는 용어가 다양하게 제안
  - ✓ 지불형, 이용형, 증권형 등으로 진화된 Crypto Token의 다양한 성격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함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 목 차 >

1. 정책적 접근방향

2. 입법 취지(제안 이유)

3. 전자금융거래법 쟁점별 논의 사항

가. Crypto Token 용어 정리

나. 거래소(취급업)의 범위

다. 거래소(취급업)의 진입규제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쟁점별 논의 사항**

7

3. 가. Crypto Token 용어 정리

[국회 제안 제·개정 법률안에 사용된 Crypto Token 용어에 대한 정의 비교]

구분	관련법률	용어	기능		표시	적용제외
			지급수단	가치저장		
박용진案	전금법	가상통화	O	O	전자적 방법	①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등과 교환할 수 없는 것 ②전자화폐
정태옥案	특별법	가상화폐	O	O*	전자적 방법	①내. 외국통화 ②전자지급수단(전금법§2)
정병국案	특별법	암호통화	O	O	디지털 단위	①게임머니 ②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등과 교환할 수 없는 것 ③전자화폐(전금법§2)
제윤경案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	가상통화	O	O	전자적 방법	①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것 ②게임머니 ③선불지급수단·전자화폐(전금법§2)
하태경案	전금법	암호통화	O	O	전자적 방법	①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등과 교환할 수 없는 것 ②전자화폐

혁신가들의 토론

TEK&LAW

3. 가. Crypto Token 용어 정리

[문제점]

- 현재 (가상/암호/crypto/디지털/) + (화폐/통화/증표/토큰/코인/자산/currency/asset)을 조합한 용어 사용례 존재 (예, 가상통화, Crypto Token 등)
  - ✓ 가상(virtual)은 허상/비실체적이라는 의미로서 모호하고 부정확
  - ✓ 암호(crypto)는 'crypto'가 '비밀스런', '숨겨진'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로서 자금세탁, 불법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
  - ✓ 지불형, 이용형, 자산형 등 Crypto Token 종류가 진화 중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성격과 용도
  - ✓ 가치 변동성이 커서 실거래 사용 실적이 미미하므로 화폐로서의 지불기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법정화폐의 대체재로 오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자산으로서의 내재적, 실질적 가치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3. 가. Crypto Token 용어 정리 =>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연구결과]

- 명칭 : 중립적 가치를 설명하여 태생에 근접한 용어로서 '**디지털토큰**'이 가장 적합
  - ✓ 향후 디지털토큰의 기능은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이는 바, '화폐'나 '통화'를 기본 성격으로 하는 것은 많은 오해와 과잉규제 초래
- 정의 : 기술적 핵심 속성으로 '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해야(하태경 의원안)
  - ✓ (『분산원장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사용하여』)를 정의에 포함해야
  - ✓ 디지털토큰과 유사한 것(예, 게임머니)들을 구별하게 할 것으로 사료됨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3. 가. Crypto Token 용어 정리 => 디지털 토큰

[제안안]

제2조

23. "디지털토큰"이란 분산원장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된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서 교환의 매개수단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나. 전자화폐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 목 차 >

1. 정책적 접근방향

2. 입법 취지(제안 이유)

3. 전자금융거래법 쟁점별 논의 사항

가. Crypto Token 용어 정리

나. 거래소(취급업)의 범위

다. 거래소(취급업)의 진입규제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쟁점별 논의 사항**

12

3. 나. 거래소(취급업)의 범위

[취급업종 비교]

구 분	박용진案	정태옥案	정병국案	하태경案
취급업종	매매,거래,중개, 발행,관리업	거래,계좌관리 업,보조업	매매,거래,중개, 발행,관리업	매매,거래,중개,관리 업

[문제점]

- '발행'은 보통 사업자가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 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급업종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연구결과]

- **'발행'은 취급업종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3. 나. 거래소(취급업)의 범위

[제안안]

제2조

24. "디지털토큰취급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 다.

가. 디지털토큰매매업: 디지털토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나. 디지털토큰거래업: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 디지털토큰중개업: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라. 디지털토큰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디지털토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토큰 취급업무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 목 차 >

1. 정책적 접근방향

2. 입법 취지(제안 이유)

3. 전자금융거래법 쟁점별 논의 사항

가. Crypto Token 용어 정리

나. 거래소(취급업)의 범위

다. 거래소(취급업)의 진입규제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쟁점별 논의 사항**

15

3. 다. 거래소(취급업)의 진입 규제

[디지털토큰취급업 진입규제 관련 외국 입법례]

국가	거래소(취급업) 진입규제 현황
싱가포르	싱가포르 금융 감독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디지털토큰 거래 중개자(ICO 포함)가 더욱 엄격한 법률실사와 AML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고 함
미국	FinCEN - 모든 디지털토큰 거래소가 등록해야 함
일본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디지털토큰 거래소 등록제 시행
영국	디지털토큰 파생상품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영국 금융업무 행위감독기관(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홍콩	홍콩금융선물위원회(SFC)는 우선 디지털토큰 거래소에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관리하기로 함.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거래소는 정식 거래소 규제가 생기기 전까지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됨. 당국은 샌드박스 형태로 거래소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추후 디지털토큰 거래소 인가제(License)를 도입할 계획임. 다만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디지털토큰 거래소에는 별도의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
에스토니아	디지털토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가 필요함 라이선스 1: Provider of a virtual currency against a fiat currency exchange service 라이선스 2: Provider of a virtual currency wallet service

혁신가들의 토론회 TEK&LAW

3. 다. 거래소(취급업)의 진입 규제

[디지털토큰취급업 진입규제 비교]

구 분	박용진案	정태옥案	정병국案	하태경案
진입 규제	금융위원회 인가	금융위원회 인가 *보조업은 인가불요	금융위원회 등록	금융위원회 허가
자본 요건	자기자본 5억원이상	자본금 30억원이상 (거래·계좌관리업)	자기자본 1억원이상	자본금(또는 출자총액) 20억이상
기타요건	▪충분한 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사업계획·재무상태의 건전성	▪충분한 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사업계획·재무상태의 건전성	▪충분한 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사업계획·재무상태의 건전성 ▪이해상충방지체계 ▪외국 취급업소의 국내 영업소 설치의무	▪충분한 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사업계획·재무상태의 건전성 ▪주요출자자에 대한 재무요건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3. 다. 거래소(취급업) 의 진입 규제

[문제점]

- 규제의 초점은 디지털토큰을 발행하거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모집 과정에 있음
- 디지털토큰 발행과정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이외에 **디지털토큰(증권형은 제외)은 디지털 자산에 불과하므로 매매, 거래, 관리는 특별히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 대표적 디지털 자산인 게임아이템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 그밖에 디지털 자산의 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율 가능
- 디지털토큰 중개업(거래소)의 경우, 디지털토큰의 유형(자산형,이용형,지불형) 구분 없이 일률적 규제는 과잉 규제
- 적어도 증권형을 제외한 디지털토큰의 거래업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인·허가 보다는 완화된 진입규제를 두는 것이 타당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3. 다. 거래소(취급업) 의 진입 규제

[연구결과]

- 디지털토큰의 매매, 거래, 중개, 관리 등은 디지털토큰의 유형에 따라서 증권형인 경우 전금법을 적용하고, 이용형 또는 지불형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적용
- 따라서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털토큰거래업만 적용하되, 디지털토큰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안 가능

[1안] **디지털 토큰 유형별로 차별규제**

✓ 증권형 토큰 : [a안] 금융위 등록제

✓ 비증권형(이용형/지불형) 토큰

- [a안] 비증권형 토큰은 실물거래이므로 기존 소비자보호법령, 게임아이템법령 등 적용
- [b안] 금융위 고시(가이드라인)
- [c안] 민간협회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2안] **디지털 토큰 유형 불문 거래업은 금융위 등록제(거래업 이외는 고시)**

3. 다. 거래소(취급업) 의 진입 규제

[제안 1안 - 디지털토큰 유형별로 구분]

제38조의2(디지털토큰취급업의 등록 등) ①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디지털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에 디지털토큰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토큰을 국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디지털토큰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 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안]**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안]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협회의 자율규제규칙으로 정한다.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3. 다. 거래소(취급업) 의 진입 규제

[제안2안- 디지털 토큰 유형 불문 거래업은 금융위 등록제]

제38조의2(디지털토큰취급업의 등록 등) ①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토큰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토큰을 국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00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디지털토큰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 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 목 차 >

1. 정책적 접근방향

2. 입법 취지(제안 이유)

3. 전자금융거래법 쟁점별 논의 사항

가. Crypto Token 용어 정리

나. 거래소(취급업)의 범위

다. 거래소(취급업)의 진입규제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쟁점별 논의 사항**

22

3.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기구(FINMA)가 2018.2. 발표한 가이드라인]

Categories	Functions/purposes	ICO 당시 증권 여부	
		토큰이 이미 있는 경우	토큰 없고, 계약상 지위 이전 가능할 경우
Payment tokens (지불형)	지불수단으로서만 기능	• 증권 아님 • 스위스 자금세탁법 적용	증권 (자금세탁법은 적용안됨)
Utility tokens (이용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을 제공	• 증권아님(오직 유틸리티형) • 증권(투자적 기능을 할 경우)	
Asset token (증권형)	- 실제 physical underlyings, 회사 또는 수익흐름에 참여 - 배당금 또는 이자수급권 -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유사	• 증권 • 증권법 및 민법 적용	

-> 규정은 토큰의 기능 (지불형, 유틸리티형 또는 자산형/증권형 토큰)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며, 증권이 아닌 한 규제 없음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3.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미국 SEC의 토큰에 대한 입장]

- SEC는 토큰이 증권일 경우 증권법에 따라 선등록후 발행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 표시. 최근 증권으로 판단된 미등록 토큰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섬
- 증권이 아닐 경우에는 별다른 규제 없으며, Crypto Token 거래소도 상장시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로펌 의견서 요구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 토큰의 구별]

▪유틸리티 토큰은 이익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사용에 대한 기대를 수반해야
(should carry an expectation of use, not an expectation of profits)

▪Howey test를 충족하면 증권(투자계약증권)

- ✓ 금전의 투자가 있고(a person invests their money)
- ✓ 그러한 금전이 공공의 사업에(in a common enterprise) 투자가 되며
- ✓ 그 목적이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것(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이고
- ✓ 투자된 금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오로지 사업자나 제3자의 노력에 의한 것
(based on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3.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이스라엘 증권부(Israel Security Authority) 입장(2018. 3. 보고서)]

- 유틸리티 토큰
  - ✓ "특정 벤처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토큰(Confers usage rights in a product or service offered by a specific venture)
  - ✓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청산, 거래 또는 지불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토큰(Tokens that are used solely for clearing, exchange or payments for a specific project)
- 증권형 토큰
  - ✓ 지분, 채권 또는 참여단위와 같은 전통적인 증권에 대한 것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토큰(conferring rights similar to those of conventional securities, such as shares, bonds, or participation units)
  - ✓ 소유자에게 미래의 현금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특정 벤처에 대한 소유권, 참여, 또는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토큰(entitling the holder to the future cash flow or "ownership rights, participation, or membership in a specific venture)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3.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리투아니아: ICO 가이드라인(2018.06.06)]

- **적용 법률**
  - ✓ **토큰을 가지는 자에게 경영권이나 이윤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예로, 토큰을 가지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함)
    -> 민법, 돈세탁방지법, 반테러주의융자법
  - ✓ 토큰을 가지는 자에게 경영권이나 이윤을 부여한 경우
    - 증권형 토큰인 경우: 증권법
    - 크라우드 펀딩형 토큰인 경우: 크라우드펀딩법
    - 토큰의 2급 시장에 참여하거나 구축하는 실체, 금융 도구의 특징을 가지는 ICO인 경우: 금융도구시장법
    - ICO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모집한 자금을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한 실체인 경우: 집합투자주체법, 내부투자자에대한집합투자기관법, 전문투자자에대한집합투자기관법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3.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ICO법안 제시(2018.8.2)]

1. 본 법안은 전환용 증권형 토큰(convertible security token)을 개최 및 발행하는 필리핀 기업의 ICO또는 필리핀 시민을 타깃으로 하는 ICO 범위에서 적용 됨.
2. 제시된 법안은 두 갈래로 ICO를 평가하는 방안으로 (a) 초기 평가(initial assessment)와 (b) 공식 등록(registration proper)이 요구됨.
3. 필리핀에서 개최되거나 필리핀 스타트업 또는 기업이 실행하는 ICO는 기초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내용(백서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발행 토큰이 증권형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야 함.
4.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받은 후 20일간의 기간내로 본 토큰이 증권형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함.
5. 증권거래위원회의 의견상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될 시, 발행기업은 토큰 발행 전 토큰을 증권형으로 등록해야 함 (법안에서 지정하는 제외항목은 면제됨).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3.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문제점]

- 여러 법률안은 디지털토큰 발행'업'도 디지털토큰 취급업종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으나
  - ✓ '발행'은 보통 사업자가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 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
- 디지털토큰 발행에 있어서 자산형, 이용형, 지불형 등 그 속성에 따른 구별 없이 디지털토큰 발행에 대한 일률적이고 엄격한 진입규제를 두는 것은 부당함
- 다른 국가들과 같이 증권형 디지털토큰과 비증권형 디지털토큰의 경우를 나누어 규제함이 상당
  - ✓ 다만, 다른 국가들은 증권형이 아니면 발행에 별다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에 비해
  - ✓ 우리나라는 ICO를 이용한 자금모집에 국민적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 개발전 토큰판매의 경우는 등록제로 규제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3.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연구 결과]

- 디지털토큰 발행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되, 디지털토큰의 유형에 따라 규제

✓증권형 : 전금법에 별도 규정

- 토큰발행주체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
-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발행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준용

✓비증권형(지불형/이용형)

- 전금법에 등록제 규정
  - 토큰발행주체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단, 증권형보다 완화된 등록요건)
  -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통해 발행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준용
  - 예외로, 블록체인서비스 출시후 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등록의무 면제하되, 서비스 출시 후 판매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자율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상당(정부 심사 부담 완화)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3. 라. 토큰의 종류에 따른 자금공모 발행규제

[제안안]

제38조의5(디지털토큰의 발행) ①누구든지 블록체인서비스 출시 전에 그 서비스에 이용될 디지털토큰을 매매(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토큰이라고 할지라도 사전발행된 것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가. 그 **디지털토큰을 직접 매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나. 위 **디지털토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다. 본조의 적용을 받는 토큰인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단체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가. 대통령령에 따른 금융위원회 등록, 나. 자본시장법 규정 준용은 디지털토큰의 유형(증권형, 지불형, 이용형) 마다 다른 기준으로 규율(비증권형은 좀 더 완화된 규제)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전자금융거래법 연구 결과 정리(1)

쟁점	제안안	제안안의 취지
Crypto Token 용어 정리	디지털토큰	• 가상통화, Crypto Token 등 통화를 암시하는 용어 대신 대체용어로서 '디지털토큰'이 적합 • 분산원장기술을 정의에 추가 : 디지털토큰과 유사한 개념들과 구별 용이
거래소 (취급업)의 범위	디지털토큰매매업, 디지털토큰거래업, 디지털토큰중개업, 디지털토큰관리업	• '발행'은 보통 사업자가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 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급업종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발행'은 취급업종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거래소 (취급업)의 진입규제	[1안] 디지털 토큰 유형별로 차별규제 ✓증권형 토큰 : [a안] 금융위 등록제 ✓비증권형(이용형/지불형) 토큰 [a안] 비증권형 토큰은 실물거래이므로 기존 소비자보호법령, 게임아이템법령 등 적용 [b안] 금융위 고시(가이드라인) [c안] 민간협회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2안] 디지털 토큰 유형 불문 거래업은 금융위 등록제(거래업 이외는 고시)	• 규제의 초점은 디지털토큰을 발행하거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모집 과정에 있음 • 디지털토큰 발행과정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이외에 디지털토큰(증권형은 제외)은 디지털 자산에 불과하므로 매매, 거래, 관리는 특별히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디지털토큰 중개업(거래소)의 경우, 디지털토큰의 유형(자산형, 이용형,지불형) 구분 없이 일률적 규제는 과잉 규제 • 적어도 증권형 외의 디지털토큰 거래업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인·허가 보다는 완화된 진입규제를 두는 것이 타당

혁신가들의 토론

TEK&LAW

전자금융거래법 연구 결과 정리(2)

쟁점	제안안	제안안의 취지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 디지털토큰 발행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되, 디지털토큰의 유형에 따라 규제 1. 증권형 : 전금법에 별도 규정 ✓ 토큰발행주체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발행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준용 2. 비증권형(지불형/이용형) : 전금법에 등록제 규정 ✓ 토큰발행주체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단, 증권형보다 완화된 등록요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통해 발행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준용 ✓ 예외로, 블록체인서비스 출시후 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등록의무 면제하되 자율규제로 서비스 출시 후 판매인지 여부 판단을 맡기는 것이 상당(정부 심사 부담 완화)	• 여러 법률안은 디지털토큰 발행'업'도 디지털토큰 취급업종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으나 '발행'은 보통 사업자가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 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 • 디지털토큰 발행에 있어서 유형(자산형, 이용형, 지불형) 구분 없이 디지털토큰 발행에 대한 일률적이고 엄격한 진입규제를 두는 것은 부당함 • 증권형 디지털토큰과 비증권형 디지털토큰의 경우를 나누어 규제함이 상당

혁신가들의 토론

TEK&LAW

< 목 차 >

1. 정책적 접근방향

2. 입법 취지(제안 이유)

3. 전자금융거래법 쟁점별 논의 사항

가. Crypto Token 용어 정리

나. 거래소(취급업)의 범위

다. 거래소(취급업)의 진입규제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쟁점별 논의 사항

33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정의 규정(제2조)

[제윤경 의원 제안 특금법 개정안 규정]

제2조 제1호 하목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이하 "가상통화"라 한다)를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통화 취급업소"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가상통화에서 제외한다.
1)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4)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정의 규정(제2조)

[문제점]

- 가상통화, Crypto Token 등 통화를 암시하는 용어 대신 대체용어 사용 필요
  - ✓ 산업계가 Crypto Currency를 가상통화(가상화폐, 암호통화, Crypto Token)로 부름에 따라 이를 정부가 유사 통화로 간주해 금융거래에 준하는 규제 도입의 빌미를 제공함. G20 및 한국통계청은 암호자산(Crypto Asset)이라는 용어 채택
  - ✓ 최근 Crypto Currency는 지불형, 유틸리티형, 자산형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는 추세이고, token이라는 용어도 일부 국가의 정부문서에서 채택됨(스위스, 싱가폴), 가상금융자산(몰타, 버뮤다)
  - ✓ 이미 블록체인 서비스가 출시된 후 발행된 Crypto Token의 거래는 금융거래로 보기 곤란

- 가치이전만 가능하면 '가상통화'로 규정하는 문제
  - ✓ 단서에서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은 가상통화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마일리지와 같은 리워드형 혜택도 비블록체인 방식으로 이전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할 경우 '가상통화'가 되는 문제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정의 규정(제2조)

[연구 결과]

- **<u>전금법 개정안과 통일된 용어로서 '디지털 토큰'이 적합함</u>**

- 분산원장기술을 정의에 추가
  - ✓ 디지털토큰의 정의 규정에 『분산원장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사용하여』를 포함
  - ✓ 디지털토큰과 유사한 개념들과 구별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사료됨
  - ✓ 추후 등장하는 다른 기술을 통해 가치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 법령 개정을 통해 정의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정의 규정(제2조)

[제안안]

제2조 제1호 하목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산원장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이하 "디지털 토큰"이라 한다)를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금융회사의 조치 등(제5조)

[제윤경 의원 제안 특금법 개정안 규정]

제5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금융회사의 조치 등(제5조)

[문제점]

- 제2항 제3호는 법률사항이므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의무의 불확정성을 초래

[연구 결과]

- 제2항 제3호의 시행령 위임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규제사항을 나열하여 규정하여야 함

[제안안]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
> 가.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제6조)

[제윤경 의원 제안 특금법 개정안 규정]

> 3.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
>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
>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 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
> 1)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통화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는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획득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제6조)

[문제점]

- 금융회사 등이 보고의무의 주체일 뿐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는 의무주체가 아님
  - ✓ 금융회사의 보고의무 부담으로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기피하는 현상 발생, 다수의 거래소가 가상계좌발급을 받지 못해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연구결과]

-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에게 일정한 사항 확인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전신송금시 정보제공(제7조)

[제윤경 의원 제안 특금법 개정안 규정]

제7조(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내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2. 해외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전신송금시 정보제공(제7조)

[문제점]

- 현행 법률 규정을 가상통화취급업소에도 적용함
  - ✓ 디지털토큰이 거래되는 거래소 별로 여러가지 시가가 존재하므로 500만원 상당 기준을 충족하는 객관적 구체적 기준 필요
  - ✓ 디지털토큰의 전송시 수취인의 지갑주소만 알 수 있을 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불가 및 송금 받는 금융회사 등 부존재

[연구 결과]

- 이 조항은 디지털토큰 송금시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수정함이 타당

혁신가들의 토론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전신송금시 정보제공(제7조)

[제안안]

제7조(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는 제외한다.

혁신가들의 토론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제8조)

[제윤경 의원 제안 특금법 개정안 규정]

제8조(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자료 및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제8조)

[문제점]

-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는 디지털토큰 전송시 그 수취인을 알 수 없음(지갑주소만을 알 수 있음)

[연구 결과]

- 수취인에 관한 정보에 대한 보존의무는 그 지갑주소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수정함이 상당함

[제안안]

제8조(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 및 정보는 제외한다.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일정한 사항 신고 의무(제10조)

[제윤경 의원 제안 특금법 개정안 규정]

제10조(신고) ①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일정한 사항 신고 의무(제10조)

[문제점]

- 제1항 신고사항을 제1호에서 상호, 대표자의 성명만 열거하고, 제2호에서 시행령에 대폭 위임
- 신고의무는 법정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이 상당

[연구 결과]

- 제2호는 삭제함이 상당

[제안안]

제10조(신고) ①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조치(제11조)

[제윤경 의원 제안 특금법 개정안 규정]

제11조(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조치)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2.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4. 특금법 개정안 쟁점별 논의사항 –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조치(제11조)

[문제점]

-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조치사항 중에 이용자의 거래내역 분리(제1호) 이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의무의 전체를 파악할 수 없음
- 법률사항이라면 이 법 자체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이 상당

[연구 결과]

- 제2호의 대통령령 위임 부분은 삭제하고, 신고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이 상당

[제안안]

제11조(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조치)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제윤경 의원안과 제안안 비교(1)

조항	제윤경 의원안	제안안	제안안의 취지
제2조 (정의) 제1호 하목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이하 "가상통화"라 한다)를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후략)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산원장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이하 "디지털토큰"이라 한다)를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가상통화, Crypto Token 등 통화를 암시하는 용어 대신 대체용어로서 '디지털토큰'이 적합 • 분산원장기술을 정의에 추가 : 디지털토큰과 유사한 개념들과 구별 용이
제5조 (금융회사의 조치 등) 제2항 제3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 제2항 제3호는 법률사항이므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의무의 불확정성을 초래 • 제2항 제3호의 시행령 위임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규제사항을 나열하여 규정하여야 함
제6조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 의무) 제1항 제3호	3.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통화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는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획득	별도 규정 없음	• 금융회사의 보고의무 부담으로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기피하는 현상 발생, 다수의 거래소가 가상계좌발급을 받지 못해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에게 일정한 사항 확인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혁신가들의 토론

TEK&LAW

제윤경 의원안과 제안안 비교(2)

조항	제윤경 의원안	제안안	제안안의 취지
제7조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제1항 제3호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본문 동일. 단,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는 제외한다.	• 디지털토큰의 전송시 수취인의 지갑주소만 알 수 있을 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불가 및 송금 받는 금융회사 등 부존재 : 이 조항은 디지털토큰 송금시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수정함이 타당
제8조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정보의 보유 기간 등) 제1항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본문 동일. 단,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 및 정보는 제외한다.	•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는 디지털토큰 전송시 그 수취인을 알 수 없음(지갑주소만을 알 수 있음) • 수취인에 관한 정보에 대한 보존의무는 그 지갑주소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수정함이 상당
제10조 (신고) 제1항	①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윤경 의원안은 제1항 신고사항을 제1호에서 상호, 대표자의 성명만 열거하고, 제2호에서 시행령에 대폭 위임한 문제점 • 신고의무는 법정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이 상당함
제11조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조치)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2.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조치사항 중에 이용자의 거래내역 분리(제1호) 이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의무의 전체를 파악할 수 없음 • 법률사항이라면 이 법 자체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이 상당

혁신가들의 토론

TEK&LAW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토 론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의견

유 재 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MEMO

MEMO

토 론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의견

최 화 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MEMO

MEMO

토 론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의견

송 창 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토 론 문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1. 가상통화업 제도화와 관련하여

□ 먼저 암호화폐의 용어 정리와 관련하여, 기존 법체계와의 혼선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경제적 기능 면에서 기존 법체계에 따라 분류된 다른 대상물의 속성과 오인될 소지를 최대한 배제할 필요.

○ '통화'라는 용어는 화폐(법화)와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산'이라는 용어가 바람직. 다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블록체인기술과 관련이 없는 다른 디지털 자산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암호화자산(Crypto-asset)'이 적절.

□ 범용성 개념을 포섭시킬 것인지와 관련하여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등 범용성 있는 종류의 가상통화 또는 법화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범용성의 한계를 넘을 수 있으므로 굳이 범용성을 그 개념에 포섭시킬 필요는 없을 듯.

○ 다만, 현재 가상통화에 대한 논의가 개방형 블록체인 발전의 유인기제로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 다른 형태의 디지털 자산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기술 활용 여부를 정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

○ '암호화자산(가상통화)이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 다음으로 취급업의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산업발전과 투자자보호를 고려할 때 일응 제도권 내로 편입시킬 필요성은 존재. 다만, 산업적 측면과 투자자보호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국제적인 법제화 동향도 함께 살필 필요.

○ 가상통화의 위험성이 증권과 유사하고(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으나,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음), 취급업의 본질이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중개업자에 대한 진입요건을 참고할 필요.

○ 거래상대방에 따라,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15억원, 일반투자자까지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30억원 정도로 최소자본금의 차이를 두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에 준하는 지배구조와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

□ 다만, 속성상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통화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됨. 속성이 동일함에도 자본시장법이 아닌 다른 법체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정합성이나 규제의 형평성에 반함.

○ 발행자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발행규제와 집합투자업 규제가 적용될 수 있고, 거래대상 가상통화가 금융투자상품(특히 증권)의 속성을 가질 경우 취급업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규제가 적용.

□ 아울러 증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상통화의 가치가 특정회사의 영업활동이나 특정사업의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회사의 영업활동이나 해당 사업활동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진행상황을 공시하도록 할 필요.

□ 참고로 증권형 가상통화의 경우, 현재의 경직적인 자금조달 제도와 회수시장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증권법제의 영역으로 일정 부분 그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 그런 면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 혁신 방안은 매우 의미가 있음.

2. FATF 국제기준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 한편, 가상통화업의 제도화 문제와는 별개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외국가 및 국제기구는 가상통화업 제도화, ICO 허용 여부 문제보다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먼저 도입하는 추세.

○ 실제로 EU, 미국 모두 가상통화 인·허가, 등록 등 제도화 규정보다 먼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선제적으로 도입. 또한, G20,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는 “가상통화업 제도화, ICO와 별개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각 회원국에 요구.

□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미국, 중국, 독일, 영국 등 다수 선진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FATF에서 국제적 Standard를 제정. FATF는 국가들의 Standard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미이행 국가 명단을 전세계에 공개.

○ 나아가, 회원국들로 하여금 미이행 국가들 소재 기업, 금융회사와 거래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거래 금지를 요구하기도 함.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FATF 상호평가를 수검받을 예정이며, 이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를 강화.

□ 미국 등 선진국은 FATF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는 한편, FATF의 요구에 따라 국내·외국계를 불문하고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음.

○ 특히, 미국 재무부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BNP 파리바 등에게 80억 달러(한화 약 8조원)가 넘는 제재금을 부과. 작년말 NH은행에 대해서도 약 100억원 상당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한국 은행들에 대해서도 검사·감독 강화.

○ 국내 금융회사가 미국의 Sanction을 피하기 위한 출발점은 자신의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고객확인)하고, 거래 모니터링을 철저히 강화하는 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서 출발.

□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중요성을 가진 FATF는 최근 '18.10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기준 개정하고 이례적으로 성명서까지 발표하여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촉구. 또한, 자금세탁방지의무는 "가상통화 제도화 논의와는 별개"인 점을 분명히 밝힘.

□ FATF가 가지는 국제적 파급력(국제기준 미이행시의 문제), 다른 가상통화 관련 규제와는 달리 자금세탁방지는 이미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점, FATF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무이행 감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 가상통화 관련 사업들은 국경간 거래(해외 송금 등)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만 국제적으로 합의가 도출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입법하지 않을 경우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

토 론

디지털 토큰의 규율 방안

이 상 용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 토큰의 규율 방안

이상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블록체인 기술

분산원장기술
- 불변성
- 투명성
- 본인 인증
- 탈중앙화

분류
- 프라이빗 체인
- 퍼블릭 체인

법제도적 영향
- 책임의 분산
- 개인정보보호
- 스마트계약
- 토큰의 규율

디지털 토큰

정의

- 다양한 용어
- 공통 개념 요소 : 분산원장기술 (DLT)

디지털 토큰의 분류 (스위스 FINMA 가이드라인 18.2.)

- 지불형 (Payment Tokens)
- 이용형 (Utility Tokens)
- 증권형 (Asset Tokens)

기능적 접근

지불형

- 지급·교환·가치저장 : 지급결제법

이용형

- 권리의 표창 : 일반 민사법

증권형

- 투자 및 자금 조달 : 자본시장법

토큰을 활용한 자금 조달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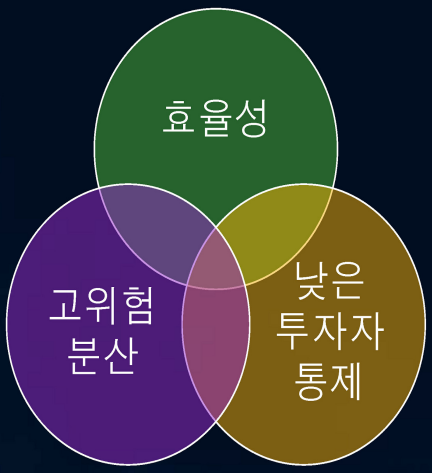

토큰을 활용한 자금 조달 – 사회적 이익형량

편익

- 경제적 효율성 증대
- 정적 효율성 : 거래비용 절감 (disintermediation)
- 동적 효율성 : 혁신

위험

- 투자자 보호
- 자금세탁방지(AML) / 테러자금조달금지(CTF) / 고객신원확인(KYC)

토큰을 활용한 자금 조달 – 도덕적 기반

자율 패러다임

- 공리주의 / 의무론적 자유주의 (칸트)
- 사적자치
- 한계 : 정보 비대칭 / 인지 및 판단의 비합리성 / 협상력 격차

후견 패러다임

- 공동체주의 / 덕(virtue)의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 실질적 사적자치
- 한계 :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자신이 가장 잘 앎

블록체인 관련 일반적 규제 전략

규제 전략의 패러다임

- 관망 vs. 선도적 규제
- 자율 규제 vs. 법적 규제
- 억제적 규제 vs. 촉진적 규제

전략의 선택

- 편익과 위험의 사회적 이익형량
- 자율과 후견을 둘러싼 가치판단

절차의 문제

- 대의민주주의 : 입법부나 행정부 등 대의기관이 결정하여야
-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 대의기관의 결정은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그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반하여야 (impact assessment)

디지털 토큰 관련 입법 전략

입법 전략의 패러다임

- 특별법 제정 vs. 기존 법 개정
- 종합적 입법 vs. 개별적 입법
- 통일적 규율 vs. 기능별 규율

검토

-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 방법은 여전히 발전 중임. 블록체인 기술은 범용 기술인 동시에 제도 관련 기술이므로 사회와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함.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서 각국 정부와 기업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
- 따라서 신속하고 통일적이며 전략적인 접근 필요. 이를 위하여는 기존의 개별법 개정보다 종합적 규율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효율적.
- 디지털 토큰 일반에 대한 통일적 규율은 지양하고, 기능에 주목하여 지불형 토큰, 이용형 토큰, 증권형 토큰 별로 분리 규율할 필요 (하나의 종합적 특별법에 편장을 나누어 분리 규정)

증권형 토큰 관련 규율 전략

규율 전략의 유형

- 자본시장법제에 의한 규율 vs. 기타 법제에 의한 규율
- 거래소 중심 규율 vs. 발행자 중심 규율

검토

- 지불형 토큰의 경우 지급결제법제, 이용형 토큰의 경우 일반 민사법제에 의하여 규율.
-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제에 의하는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은 거래의 전자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금융 및 상거래 법리가 큰 틀에서 유지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수단적 성격.
- 개인정보법제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 활용 일반에, AML/CTF/KCY는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디지털 토큰 일반에, 소비자법제는 이용형 토큰이나 증권형 토큰에 적용 가능.
- 지불형 토큰의 경우 발행자가 없으므로 거래소 중심 규율이 타당하나, 이용형 토큰이나 증권형 토큰은 발행자가 존재하므로 발행자 중심 규율이 타당함.
- 다만,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기본적 원칙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대표 발의 의원 이름	법안	관련성
1	정병국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가상화폐 정의, 거래 및 거래소 운영
2	정태옥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상동
3	박용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동
4	채이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화폐 거래 및 거래소 운영
5	제윤경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화폐 금융상품으로 인정, 금융제도권 편입 규정 마련
6	신용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된 블록의 전자문서 인정
7	신용현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동
8	권은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블록체인 기술의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9	오세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블록체인 기술의 위치정보보호법 저촉
10	하태경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화폐 정의, 거래 및 거래소 운영

증권형 토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가능성

자본시장법의 목적

- 금융혁신 / 공정경쟁 / 투자자 보호 (1조)

금융투자상품 (3조)

- 투자성 (원본 손실 위험)
- 문서성은 요소가 아님
- 증권과 파생상품
- 포괄주의 : 증권은 6가지로 구분되나(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넓게 규정하여 포괄주의 관철하고자 함.

증권형 토큰의 규제 방안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유형

- 진입 규제
- 건전성 규제
- 행위 규제

증권형 토큰의 경우

- 증권형 토큰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신기술 혁신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진입 규제나 건전성 규제는 부적절
-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활용할 필요
-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주로 행위 규제에 중점을 두어야

토 론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의견

한 서 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의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1.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에 관한 의견

우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지급수단으로 전자자금이체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 화폐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토론자께서 “디지털토큰”이라고 명명한, 소위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를 염두에 두고 입법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토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암호화폐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취급업자 즉, 암호화폐를 매매하고 거래, 중개, 관리하는 사업자를 취급업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발행업자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서 토큰을 발행할 필요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면 족하고 발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업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토론자의 생각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허가나 인가제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두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산업이 매우 위축될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거래소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입규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므로 우선,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KRX가 증권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수의 증권거래소와 대체거래소(ATS)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은 경쟁적인 거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등록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등록제도가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산업계로부터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암호화폐 발행을 허용하되 다만 암호화폐의 성질에 따라서 규제를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스위스에서는 토큰의 성격을 유틸리티형, 화폐형, 자산형으로 나누고 자산형 내지 증권형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유틸리티형과 증권형 토큰으로 나누고 증권형 토큰의 경우 금융당국인 MAS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투자자와 투자 유치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일정한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상황과 어느정도 궤를 맞추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고 자본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일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증권의 발행과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ICO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규제의 적정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적격투자자에 의한 ICO 투자 및 공모가 아닌 사모 투자 방식에 의한 ICO 투자의 경우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ICO를 통한 투자금 유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증권형 토큰이라도 이를 규제할 실익이 매우 적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적용 제외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행 자본시장법상 허용하고 있는 펀딩 규모가 너무 작아서 사실상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사장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보다 훨씬 더 넓게 허용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을 특정하고, 신고업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가상통화 전체에 대한 규율을 하는 대신에 오로지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입법안은 매우 미흡한 수준의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포함하고, 금융회사등이 의무이행을 위해 보고·제공·보존 등을 하는 “금융거래등”의 범위에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가상통화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통화취급업소를 통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의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본 법안에서 가상통화를 추가한 것은 매우 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법률 개정 없이 FinCEN 지침 개정만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가상통화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가상통화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및 스위위에서도 가상통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쟁점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시점에 필요한 것은 가상통화 전체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ICO 및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요건이 제대로 정립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은 자금세탁방지 관련된 쟁점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상황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면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상통화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에서 신고대상인 “금융거래”를 ①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한 거래 ② 자본시장법에 다른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거래 ③ 카지노 칩과 현금·수표를 교환하는 거래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한 거래”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반드시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신고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스위스나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인바, 법제정 형식의 문제를 떠나서 가상통화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형태의 법개정 내지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에 관해 일반적인 확인사항 외에도 안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상통화업소 신고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토록 하고(안 제6조제1항), 고객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불이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래를 종료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4항), 전신송금관련 정보제공 대상의 범위에 50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 송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안 제7조제1항). 개정안은 간접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규율함으로써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재를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입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가상통화업자가 존재할 경우를 생각해보면, 금융기관에서 가상통화업자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거래를 종료하는 정도 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상통화사업자를 규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입법은 가상통화 사업자에 대한 제대로된 규제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양산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포기한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나 산업의 정화라는 측면을 금융기관이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우회적인 규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문제를 시정하고 육성을 하는 방식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기관에 의한 간접적 제재 조치만으로는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산업의 육성과 규제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을 한다면 제정 내지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그 자체에 대한 정의 및 규제 규정 두고 이를 통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의무이행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별 첨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안)

2. 전자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안안)

의 안 번 호	00000

발의연월일 : 2018. 11. 14.
발 의 자 : 000 · 000 (10인)

1. 입법 취지(제안 이유)

디지털토큰(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불림) 산업에 대한 정책 조율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디지털토큰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일치된 정책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현재 디지털토큰에 관한 법적 제도가 전무한 상태이며, 관계 부처의 해석과 규제 또한 일관되지 않는 상황으로 정부정책의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디지털토큰은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음

이에 디지털토큰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금융거래에 있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도록 하여 디지털토큰 산업에 대한 신뢰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래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블록체인산업의 발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를 정의('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디지털토큰 취급업소가 보관, 관리, 알선 등을 위해 디지털코튼을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 등을 의무부과 대상거래('금융거래등'에 포함)로 규정함(안 제2조 제1호·제2호)

나.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의 절차 및 업무지침에 반영·운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2항)

다. 디지털토큰취급업소는 신고의무(안 제10조)를 이행하여야 함

라. 금융회사 등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 의무이행과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디지털토큰취급업소도 동일하게 이 의무를 지도

록 함(안 제8조)

마. 디지털토크취급업소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대표자의 성명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며(안 제10조 및 제11조), 종전 법안과 달리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 자체에서 규정함

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사유로 금융회사 등이 이행해야 할 조치의무(안 제5조) 위반, 자료보관의무(안 제8조 위반) 등을 추가함(안 제24조 제1항·제2항)

법률 제 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신설한다.

제1조 중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2조제1호하목 중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를”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으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것으로서 분산원장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이하 “디지털토큰”이라 한다)를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디지털토큰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거래”란”을 ““금융거래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4)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디지털토큰 취급업소가 디지털토큰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해 디지털토큰을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 그 밖에 디지털토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에”를 “제1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의2에”를 “제6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7조에”를 “제13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7조의2에”를 “제13조의2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에”를 “제14조에”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신설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8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중 "금융거래의"를 각각 "금융거래등의"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5조, 제17조, 제19조 및 제18조로 하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7조의2를 각각 제6조, 제7조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거래를"을 각각 "금융거래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4항 및 제5항에"로 한다.

⑤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금을"을 "자금 또는 디지털토큰을"로, "500만원의"를 "500만원 상당의"로 하고, 제1항 중 "단,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 및 정보는 제외한다.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자료 및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에 대한 특례

제9조(적용범위) 이 장은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10조(신고) ①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조치)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을 신설하고, 제13조의2(종전의 제7조의2)제1항 중 “제7조제1항제3호에”를 “제13조제1항제3호에”로, “제7조에”를 “제13조에”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신설하고, 제15조(종전의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3에”를 “제7조에”로, “제10조에”를 “제17조에”로, “제11조제7항에”를 “제19조제7항에”로, “제7조제8항의”를 “제13조제8항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7조에”를 “제13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7조제9항에”를 “제13조제9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의3에”를 “제7조에”로, “제10조에”를 “제17조에”로, “제11조제7항에”를 “제19조제7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에”를 “제1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3조 및 제14조와”를 “제20조 및 제21조와”로 한다.

제9조의2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종전의 제9조의2)제1항 중 “제5조의3·제6조·제10조·제11조제7항에”를 “제7조·제12조·제17조·제19조제7항에”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3호의”를 “제13조제1항제3호의”로, “제6조에”를 “제12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금융거래”를 각각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제5조의3,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제7항은”을 “제7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및 제19조제7항은”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6장 감독·검사”를 신설하고, 제19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를 “제6조 및 제7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거래정보나”를 “금융거래등의 정보나”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7장 벌칙”을 신설하고, 제20조(종전의 제13조)제1호 중 “제10조제3항의”를 “제17조제3항의”로,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을 “제15조제1항을”로, “제5조의3에”를 각각 “제7조에”로, “제10조에”를 각각 “제17조에”로, “제11조제7항에”를 각각 “제19조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9조제1항을”을 “제15조제1항을”로, “제7조제8항의”를 “제13조제8항의”로 하며, 제22조(종전의 제15조) 중 “제13조”를 “제20조”로, “제14조에”를 “제21조에”로 하고, 제23조(종전의 제16조) 본문 중 “제14조의”를 “제21조의”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5조의2제1항을”을 “제6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제11조제1항부터”를 “제19조제1항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보호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를 위반하여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금융거래등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 ----------.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하.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것으로서 분산원장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이하 “디지털토큰”이라 한다)를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디지털토큰취급업소”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디지털토큰 에서 제외한다.
〈신 설〉	1)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신 설〉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신 설〉	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신 설〉	4)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2.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금융거래등"이란----------.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디지털토큰 취급업소가 디지털토큰 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해 디지털토큰을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 그 밖에 디지털토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1. 제4조·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분석 및 제공	1. ----------제12조에----------
2.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2. ----------제6조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2. 제13조에----------
2의2. 제7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2의2. 제13조의2에----------
3. 제8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3. 제14조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1. 금융거래등과----------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금융거래등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삭 제〉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제8조에----------.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금융거래등의----------.

현 행	개 정 안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금융거래등의----------.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거래등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거래등의----------금융거래등을----------.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생 략)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현 행	개 정 안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나. 다.
〈신 설〉	③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거래등을---------- ----------. ---------- -.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1. ---------- -------금융거래등을----------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나. 금융거래등의----------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금융거래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	⑥ 제4항 및

현 행	개 정 안
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항에----------.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자금 또는 가상통화를----------500만원 상당의----------. 단,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는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 및 정보는 제외한다.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자료 및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장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에 대한 특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적용범위) 이 장은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에 대해서 적용한다.
〈신 설〉	제10조(신고) ①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디지털토큰 취급업소의 조치)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생 략)	제12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생 략)	제13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현행 제7조와 같음)
제7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제13조제1항제3호에----------제13조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생 략)	제14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현행 제8조와 같음)
〈신 설〉	제5장 보칙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다음 각 호의	제15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현 행	개 정 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7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제17조에----------제19조제7항에----------제13조제8항의----------.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4. 제13조에----------
5. 제1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한 자	5. 제19조제1항----------
6. 제7조제9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에 참여하거나 정보분석심의회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	6. 제13조제9항에----------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에----------제17조에----------제19조제7항에----------.
③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제13조에----------.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0조 및 제21조와----------. ----------.
제9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제6조·제10조·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정	제16조(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제7조·제12조·제17조·제19조제7항에----------

현 행	개 정 안
보등"이라 한다)를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 ---제13조제1항제3호의---------- ---------- -------제12조에----------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 ---------- ---------- ---------- ---------- ---------- -------금융거래등----------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3. ---------금융거래등----------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및 제19조제7항은----------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장 감독·검사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① ----------제6조 및 제7조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감독·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검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나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⑦ ----------금융거래등의 정보나----------. ----------.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장 벌칙
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
1. 제4조제5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1. ----------제17조제3항의----------금융거래등----------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2. 제15조제1항을----------제7조에----------제17조에----------제19조제7항에----------제7조에----------제17조에----------제19조제7항에----------

현 행	개 정 안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8항의 정보분석 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3. 제15조제1항을----------제13조제8항의----------
제14조(벌칙) (생 략)	제21조(벌칙)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2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0조----제21조에----------.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양벌규정) ----------제21조의----------.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 ----------1억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을----------
〈신 설〉	4. 제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보호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1조를 위반하여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9조제1항부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제1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전자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등 디지털토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블록체인 산업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는 큰 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률 중에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토큰에 관하여 규율하는 바가 없어 디지털토큰 관련 산업의 법적 허용 및 디지털토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장 적합한 용어로서 '디지털토큰'으로 통일하되 매도·매수·중개·교환·관리 등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털토큰 중개업에 한하여 등록 대상으로 하고, 디지털토큰 발행은 토큰발행주체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 설립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제 갓 태동하는 신생산업을 국가에서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산업 내부에서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토큰취급업을 디지털토큰매매업, 디지털토큰거래업, 디지털토큰중개업, 디지털토큰관리업 등으로 분류하고 디지털토큰거래업 중 해당 디지털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유형의 디지털토큰거래업 및 기타 디지털토큰취급업은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나. 디지털토큰의 발행은 토큰발행주체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시장 내에서의 자율적인 기준 심의를 위하여 한국블록체인협회 내 디지털토큰발행심

사위원회를 둠(안 제38조의6 신설).

다. 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8조의7 신설).

라. 디지털토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토큰취급업자로 하여금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38조의8 신설).

마. 디지털토큰 취급업자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 다단계판매 · 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디지털토큰을 매매 · 중개하지 못하도록 디지털토큰 거래방식을 제한함(안 제39조의9 신설).

바. 디지털토큰거래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함(안 제38조의10부터 제38조의13까지 신설).

사.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비례하는 과징금 또는 벌금을 도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의2 신설).

아. 한국블록체인협회 설립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규제기관이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를 행하도록 함(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9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2호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을”을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디지털토큰기반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디지털토큰”이란 분산원장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된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서 교환의 매개수단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나. 전자화폐

24. “디지털토큰취급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 다.

가. 디지털토큰매매업: 디지털토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나. 디지털토큰거래업: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 디지털토큰중개업: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라. 디지털토큰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디지털토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토큰취급업무

25. “디지털토큰취급업자”라 함은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등을 한 자를 말한다.

26. “디지털토큰거래”란 디지털토큰의 매도·매수·중개·교환·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27. “디지털토큰기반시설”이란 디지털토큰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8. “디지털토큰이용자”란 디지털토큰취급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디지털토큰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제5장”을 “제6장”으로 한다.

제3조에 제4,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조 제26호 디지털토큰거래에 있어서 해당 디지털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 본 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전자상거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토큰 발행이더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3장의 제목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전자금융거래 및 디지털토큰취급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등 보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 또는 디지털토큰취급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거래 및 디지털토큰취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로, "전자금융거래를"을 "전자금융거래 및 디지털토큰취급을" 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6조의3의 협회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확보를 위해 시스템 안전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각각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로 한다.

제21조의5 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각각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금융거래와"를 "전자금융거래 및 디지털토큰취급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용자"를 각각 "이용자 및 디지털토큰이용자"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46조의3의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토큰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디지털토큰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디지털토큰 이용자가 디지털토큰거래 등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제46조의7에 따라 협회가 정한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를 각각 제6장부터 제8장까지로 하고, 제5장(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디지털토큰취급업의 등록 등 및 업무

[제안 1안 - 디지털토큰 유형별로 구분]

제38조의2(디지털토큰취급업의 등록 등) ①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디지털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에 디지털토큰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토큰를 국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0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디지털토큰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안]**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안]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협회의 자율규제규칙으로 정한다.

[제안 2안 - 디지털 토큰 유형 불문 거래업은 금융위 등록제]

제38조의2(디지털토큰취급업의 등록 등) ①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디지털토큰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토큰을 국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0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디지털토큰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 적 설비를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의3(디지털토큰거래업의 등록신청) ①제38조의2 제1 내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제38조의2에 따른 등록 요건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 흠 결의 보완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심사의 방법 ·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4(미등록 디지털토큰거래업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디지털토큰 거래업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는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호에 디지털토큰의 거래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5(디지털토큰의 발행) ①누구든지 블록체인서비스 출시 전에 그 서비스에 이용될 디지털토큰을 매매(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토큰이라고 할지라도 사전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가. 해당 디지털토큰을 직접 매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나. 해당 디지털토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다. 본조의 적용을 받는 토큰인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단체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디지털토큰의 거래가 없는 때

제38조의6(협회 내 디지털토큰발행심사위원회) ① 제38조의5 제1항에 따른 등록 등 및 그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디지털토큰발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7(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확보) ①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가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서버 과부화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디지털토큰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디지털토큰거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④ 그 밖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안전성 확보의무에 관하여는 제8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5, 제21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로,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로, "전자금융거래"는 "디지털토큰거래"로, "이용자"는 "디지털토큰이용자"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은 "디지털토큰기반시설"로 본다.

제38조의8(디지털토큰이용자 피해보상계약) ①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등에 의한 디지털토큰이용자(디지털토큰취급업자인 디지털토큰이용자를 제외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해보상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디지털토큰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9(디지털토큰 거래방식의 제한) 디지털토큰 취급업자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 다단계판매 · 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디지털토큰을 매매 ·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10(시세조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디지털토큰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디지털토큰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디지털토큰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디지털토큰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디지털토큰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디지털토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디지털토큰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38조의11(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디지털토큰거래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디지털토큰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해당 디지털토큰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디지털토큰취급업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디지털토큰취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디지털토큰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 공개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截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디지털토큰거래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디지털토큰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③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화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디지털토큰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디지털토큰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38조의12(설명의무) ①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디지털토큰이용자(디지털토큰이용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하되,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인 디지털토큰이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대로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토큰의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지털토큰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디지털토큰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토큰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디지털토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13(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디지털토큰의 매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보고 의무에 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금융회사등"은 "디지털토큰취급업자"로, "금융거래"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가 디지털토큰와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로 본다.

③ 제46조의3의 협회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본인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를 "금융회사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를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를 "디지털토큰거래와"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를 “금융회사등이”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퇴임한 임원”을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은”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를 “금융회사등이”로, “제28조의 규정에”를 “제28조 또는 제38조의2 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8조의 규정에”를 “제28조 또는 제38조의2 제1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때”를 “때(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나”를 “하나(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의6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안대책 수립·시행의 업무를 위탁한 때

제46조제1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를 “금융회사등이”로, “제2항”을 “제2항(제38조의6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38조의9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장을 제9장으로 한다. 제46조의2 다음에 “제7장 암호화폐시장 자율규제기관”을 삽입한다.

제7장에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협회의 설립) ①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디지털토큰이용자를 보호하며 디지털토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 법인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4(협회의 회원) 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및 그 밖에 디지털토큰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의5(협회의 업무) 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규칙의 제·개정업무
2.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3.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 어야 한다.

제46조의6(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 함한다)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의7(분쟁의 자율조정) ① 협회는 제27조 제5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의8(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및 조치)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38조의10 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8조의10 제2항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의11 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거래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디지털토큰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 중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를 각각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8조의2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 등을 받지 아니하고 디지털토큰를 발행하거나 취급한 자

5의2. 제38조의8에 따른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디지털토큰취급업을 영위한 자

5의3. 제38조의11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권유하면서 디지털토큰의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몰수·추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디지털토큰기반시설을----------.
〈신 설〉	23. “디지털토큰”이란 분산원장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된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서 교환의 매개수단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나. 전자화폐
〈신 설〉	24. “디지털토큰취급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 다. 가. 디지털토큰매매업: 디지털토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나. 디지털토큰거래업: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 디지털토큰중개업: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라. 디지털토큰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디지털토큰을 보관 · 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토큰취급업무
〈신 설〉	25. “디지털토큰취급업자”라 함은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등을 한 자를 말한다.
〈신 설〉	26. “디지털토큰거래”란 디지털토큰의 매도·매수·중개·교환·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 설〉	27. “디지털토큰기반시설”이란 디지털토큰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신 설〉	28. “디지털토큰이용자”란 디지털토큰취급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디지털토큰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 제26호 디지털토큰거래에 있어서 해당 디지털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 본 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전자상거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토큰 발행이더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신 설〉	제3장 전자금융거래및디지털토큰취급의안전성확보 및 이용자 등 보호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및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금융회사등"이라한다)는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 또는 디지털토큰취급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_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_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_및「전자 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_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자금융거래및디지털토큰취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_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_확인 · 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 취급업자-- 전자금융거래및디지털토큰 취급을----------.
〈신 설〉	⑤ 제46조의3의 협회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안전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전자금융기반시설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을분석·평가하고그결과(「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9조에따른취약점분석·평가를한경우에는그결과를말한다)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 4. (생략)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및디지털토큰취급업자----------.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	1. ~ 4.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현 행	개 정 안
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디지털토큰취급업자----------.
③·④(생략)	③·④(현행과 같음)
제21조의5(침해사고의_통지 등)	제21조의5(침해사고의_통지 등)
①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전자적침해행위로인하여전자금융기반시설이교란·마비되는등의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_알려야 한다.	①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및디지털토큰취급업자----------.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_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_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_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이를타인에게제공·누설하거나업무상목적외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_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_제공 등) 전자금융거래 및 디지털토큰취급과----------이용자 및 디지털토큰이용자----------.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1. 이용자 및 디지털토큰이용자-----..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이용자 및 디지털토큰이용자----------.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 ④ (생략)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46조의3의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토큰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디지털토큰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디지털토큰 이용자가 디지털토큰거래 등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제46조의7에 따라 협회가 정한다.
〈신 설〉	제5장 디지털토큰취급업의 허가 및 업무
	[제안 1안 - 디지털토큰 유형별 구분]
〈신 설〉	제38조의2(디지털토큰취급업의 등록 등) ①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디지털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에 디지털토큰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토큰를 국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려는

현 행	개 정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0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디지털토큰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안]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안]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협회의 자율규제규칙으로 정한다. **[제안 2안 – 디지털 토큰 유형 불문 거래업은 금융위 등록제]** 제38조의2(디지털토큰취급업의 등록 등) ①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토큰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토큰을 국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0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디지털토큰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 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8조의3(디지털토큰거래업의 등록신청) ①제38조의2 제1 내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제38조의2에 따른 등록 요건의

현 행	개 정 안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 흠 결의 보완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본 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심사의 방법 ·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4(미등록 디지털토큰거래업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디지털토큰 거래업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는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호에 디지털토큰의 거래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5(디지털토큰의 발행) ①누구든지 블록체인서비스 출시 전에 디지털토큰의 사전 발행(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토큰이라고 할지라도 사전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신 설〉	가. 해당 디지털토큰을 직접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나. 해당 디지털토큰 발행을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디지털토큰의 거래가 없는 때 제38조의6(협회 내 디지털토큰발행심사위원회) ① 제38조의5 제1항에 따른 등록 등 및 그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디지털토큰발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38조의7(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확보) ①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가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서버 과부화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디지털토큰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디지털토큰거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④ 그 밖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안전성 확보의무에 관하여는 제8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5, 제21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로,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로, “전자금융거래”는 “디지털토큰거래”로, “이용자”는 “디지털토큰이용자”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은 “디지털토큰기반시설”로 본다.
〈신 설〉	제38조의8(디지털토큰이용자 피해보상계약) ①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등에 의한 디지털토큰이용자(디지털토큰취급업자인 디지털토큰이용자를 제외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해보상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디지털토큰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9(디지털토큰 거래방식의 제한) 디지털토큰 취급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 다단계판매 · 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디지털토큰을 매매 ·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8조의10(시세조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화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화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디지털토큰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디지털토큰를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디지털토큰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디지털토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디지털토큰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신 설〉	제38조의11(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디지털토큰거래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디지털토큰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해당 디지털토큰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디지털토큰취급업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디지털토큰취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디지털토큰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截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디지털토큰거래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디지털토큰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③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현 행	개 정 안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디지털토큰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디지털토큰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디지털토큰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신 설〉	제38조의12(설명의무) ①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디지털토큰이용자(디지털토큰이용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하되,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인 디지털토큰이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대로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토큰의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지털토큰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디지털토큰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토큰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디지털토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8조의13(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디지털토큰의 매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보고 의무에 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금융회사등”은 “디지털토큰취급업자”로, “금융거래”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가 디지털토큰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로 본다. ③ 제46조의3의 협회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본인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6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

현 행	개 정 안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에대하여 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의준수여부를감독한다.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로하여금그업무및재무상태에관한보고를하게할수있다.	② ----------금융회사등으로----------.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전자금융업무와그와관련된재무상태를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에대하여업무와재무상태에관한자료의제출또는관계인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디지털토큰거래와----------금융회사등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건전한운영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금융감독원장의건의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거나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이----------금융회사등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금융회사등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39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9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장은이를퇴임·퇴직한해당임직원에게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현 행	개 정 안
	----------.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때에는제28조의 규정에따른허가또는등록을취소할수있다.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회사등이----------제28조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따른허가를받거나등록을한때	1. ----------제28조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2. 제32조제1호_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2. ---------- 때(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6월의_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이----------하나(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안대책 수립·시행의 업무를 위탁한 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제21조제1항_또는 제2항을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 업무상목적외에사용한경우에는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_수 있다.	제46조(과징금) ① ----------금융회사등이----------제2항(제38조의6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신 설〉	② 금융위원회는 제38조의10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에_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	③ ----------금융회사등이----------

현 행	개 정 안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_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_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따른과징금을기한이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 예에따라이를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7장 디지털토큰시장 자율규제기관
〈신 설〉	제46조의3(협회의 설립) ①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디지털토큰이용자를 보호하며 디지털토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 법인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4(협회의 회원) 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및 그 밖에 디지털토큰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의5(협회의 업무) 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규칙의 제 · 개정업무 2.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3.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 어야 한다.
	제46조의6(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 함한다)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의7(분쟁의 자율조정) ① 협회는 제27조 제5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협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의8(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 ·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및 조치)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 · 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7장 벌칙 〈신 설〉	제8장 벌칙 제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3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거래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디지털토큰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_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현 행	개 정 안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_그 업무를 행한 자	5.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8조의2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을한자	6.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8조의2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디지털토큰을 발행하거나 취급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_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8조의8에 따른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디지털토큰취급업을 영위한 자
〈신 설〉	5의3. 제38조의12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권유하면서 디지털토큰의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몰수·추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